

속 초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

제1413호 2022년 9월 16일(금)

고 시

- 속초 도시관리계획(조양10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
고시 2
- 속초 도시관리계획(교동3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
지형도면 승인 고시 6

공 고

-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(대포동 393-25) 21

입법예고

- 속초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.. 23

속초시고시 제2022-147호

속초 도시관리계획(조양10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

1. 속초시 고시 제2022-145(2022. 9. 6.)호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된 “속초 도시관리계획(조양10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” 사항에 대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속초시청 건설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2022년 9월 16일

속 초 시 장

1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 - 1.1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
 - 1.1.1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조서

구 분	도면표시 번 호	구 역 명	위 치	면 적 (㎡)			비 고
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
신설	48	조양10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	속초시 조양동 1411-8번지 일원	-	증) 7,202	7,202	-

- 1.1.2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사유서

구 분	도면표시 번 호	위 치	면 적(㎡)	결 정 사 유
신설	48	속초시 조양동 1411-8번지 일원	7,202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▫ 도시 기능·미관 및 환경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하고 수준 높은 주거시설 등의 환경을 조성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른 지구 단위계획 수립

2. 용도지역·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 - 2.1.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조서
 - 2.1.1. 용도지역 지형도면 승인 조서(변경 없음)

구 분	구역내 면적 (㎡)			구성비(%)	비 고
	기 정	변 경	변 경 후		
합 계	7,202	-	7,202	100.00	-
일반상업지역	7,202	-	7,202	100.00	-

3.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3.1. 도로

3.1.1. 도로총괄표

■ 기정

구분	계			1류			2류			3류		
	노선수	연장(m)	면적(m ²)									
계	3	617	5,502	1	310	3,190	1	200	1,670	1	107	642
소로	3	617	5,502	1	310	3,190	1	200	1,670	1	107	642

■ 변경

구분	계			1류			2류			3류		
	노선수	연장(m)	면적(m ²)	노선수	연장(m)	면적(m ²)	노선수	연장(m)	면적(m ²)	노선수	연장(m)	면적(m ²)
계	3	617 (532)	6,091 (630)	1	307	3,149	1	200 (115)	1,852 (182)	1	110 (110)	1,090 (448)
소로	3	617 (532)	6,091 (630)	1	307	3,149	1	200 (115)	1,852 (182)	1	110 (110)	1,090 (448)

※()는 구역내 연장 및 면적임.

3.1.2. 도로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구 모				기능	연장(m)	기 점	종 점	사용 형태	주 요 경과지	최 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(m)								
기정	소로	1	16	10~12	국지 도로	310 (310)	청호동 444-22	청호동 444-28	일반 도로		1977.4.19 (강고 제77-72호)	
변경	소로	1	16	10~12	국지 도로	307 (307)	청호동 444-22	청호동 444-28	일반 도로			
기정	소로	2	98	8	국지 도로	200 (115)	조양동 1410-13	조양동 1416-2	일반 도로		1977.4.19 (강고 제77-72호)	
변경	소로	2	98	8~10	국지 도로	200 (115)	조양동 1410-13	조양동 1416-2	일반 도로			
기정	소로	3	140	6	국지 도로	107 (107)	조양동 1410-13	조양동 1411-9	일반 도로		1977. 4. 19 (강고 제77-72호)	
변경	소로	3	140	6~11	국지 도로	110 (110)	조양동 1410-13	청호동 444-28	일반 도로			

※()는 구역내 연장임.

3.1.3. 도로 결정(변경) 사유서

변경 전 도로명	변경 후 도로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소로 1-16	소로 1-16	◦ 연장변경: 310m → 307m	◦ 주상복합 진·출입을 위한 가·감속차로 설치에 따른 일부구간 연장변경
소로 2-98	소로 2-98	◦ 폭원변경: 8m → 8~10m)	◦ 주상복합 진·출입을 위한 가·감속차로 설치에 따른 일부구간 폭원변경
소로 3-140	소로 3-140	◦ 연장변경: 107m → 110m ◦ 폭원변경: 6m → 6~11m	◦ 주상복합 진·출입을 위한 가·감속차로 설치에 따른 일부구간 연장 및 폭원변경

4.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문

4.1.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4.1.1. 가구 및 획지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가구 번호	획 지			비고
		획지번호	위 치	면 적(m ²)	
신설	BL1	A	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1411-8번지 일원	6,572	주상복합
		B	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1410-8번지 일원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1411-7번지 일원	630	공공시설
합 계				7,202	

※ 공공시설의 경우 당해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개설하여 기부채납 예정임.

4.2.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4.2.1.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

도면번호	위치	구분	결정내용
A	조양동 1411-8 번지 일원	허용용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주택법 제2조 제3호의 공동주택, 제13호의 부대시설 및 제14호의 복리시설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4호의 업무시설
		불허용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		건폐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80% 이하
		용적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800% 이하
		높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43층 이하
		배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도면참조
		형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도면참조
		색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도면참조
		건축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건축한계선 : 6m

5. 기타사항에 관한 부문

5.1.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

도면번호	위치	구분	계획내용	비고
A	조양동 1411-8 번지 일원	단지내 조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건축법」 및 「속초시 건축조례」 등 관련법령에 의한 설치기준 이상 조성 	
		차량진출입 허용구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결정도에 차량출입허용구간으로 표현된 부분에 한하여 차량출입을 허용 교통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구간을 지정하여 차량진출입구 설치 	
		주차장 설치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주차장법」 및 「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설치기준 이상의 주차장 확보 	

속초시 고시 제2022-148호

속초 도시관리계획(교통3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

- 속초 도시관리계획(교통3지구 지구단위계획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.
- 관계도서는 속초시청 건설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2022년 9월 16일

속 초 시 장

가.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승인고시조서: 아래조서 참조

나.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: 실음생략

-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

도면표시 번호	구역명	위치	면적(m ²)			최초결정일	비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	
㉠	교통3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	속초시 교통 923번지 일원	133,395.3	감) 485.6	132,909.7	1990.8.14	

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사유서

구분	도면표시번호	위치	면적(m ²)	결정(변경)사유
변경	㉠	속초시 교통 923번지 일원	132,909.7	◦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역내 일부 포함된 학교시설의 제척을 위한 구역 조정

-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

가.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

구분		면적(m ²)			구성비(%)	비고
		기정	변경	변경후		
주거지역	계	133,395.3	감) 485.6	132,909.7	100.0	
	제1종일반주거지역	77,430.0	감) 400.6	77,029.4	58.0	
	제2종일반주거지역	12,695.0	감) 155.0	12,540.0	9.4	
	제3종일반주거지역	43,340.3	-	43,340.3	32.6	

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 시 번호	위 치	용도지역		면 적(m ²)	용적률	결정(변경)사유
		기정	변경			
①	속초시 교동 923번지 일원	제1종일반 주거지역	제1종일반 주거지역	77,029.4	200% 이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학교시설이 일부 포함 되어 있는 구간 제척 (감 485.6m²) ◦ 고시면적 오기에 따른 면적 정정 (증 85 m²) ① 금회분 제척 면적 : 감 485.6m² ② 기 고시 된 오기 면적 정정 : 증 85m² ※ 증감 면적은 → ① + ② = 감 400.6m²
		제2종일반 주거지역	제2종일반 주거지역	12,540.0	250% 이하	

나.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

1) 도로 결정(변경) 조서

■ 도로 결정(변경) 총괄조서

유 별	구 분	합 계			1류			2류			3류		
		노선수 (노선)	연장 (m)	면적 (m ²)									
합 계	기정	29	3,169	24,624.8	1	23	242.3	3	875	11,018.7	25	2,271	13,363.8
	변경	32	3,187	25,398.7	1	23	242.3	4	1,070	12,912.0	27	2,094	12,244.4
중 로	기정	1	566	8,525.2	-	-	-	1	566	8,525.2	-	-	-
	변경	1	566	8,525.2	-	-	-	1	566	8,525.2	-	-	-
소 로	기정	28	2,603	16,099.6	1	23	242.3	2	309	2,493.5	25	2,271	13,363.8
	변경	31	2,621	16,873.5	1	23	242.3	3	504	4,386.8	27	2,094	12,244.4

■ 도로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규모				기능	연장(m)	기점	종점	사용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기정	중로	2	10	15	보조간 선도로	566	대로1-1 교동957도	대로1-1 교동957도	일반 도로		90.8.14	
기정	소로	1	29	10	국지 도로	23	대로-1 교동953도	소로3-202 교동953도	일반 도로		90.8.14	
기정	소로	2	138	8	국지 도로	63	중로2-10 교동955도	공공공지 교동955도	일반 도로		90.8.14	
기정	소로	2	139	8	국지 도로	246	중로2-10 교동959도	중로2-10 교동959도	일반 도로		90.8.14	
기정	소로	3	202	6	국지 도로	415	중로1-1 교동953도	소로3-214 교동954도	일반 도로		90.8.14	

구분	규모				기능	연장(m)	기점	종점	사용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기정	소로	3	203	6	국지 도로	146	중로1-1 교동953도	소로3-214 교동953도	일반 도로		90.8.14	
기정	소로	3	204	6	국지 도로	60	소로3-202 교동953도	소로3-203 교동953도	일반 도로		90.8.14	
기정	소로	3	205	6	국지 도로	35	소로3-213 교동954도	소로3-202 교동954도	일반 도로		90.8.14	
기정	소로	3	206	6	국지 도로	246	중로2-10 교동958도	중로2-10 교동958도	일반 도로		90.8.14	
기정	소로	3	207	6	국지 도로	102	중로2-10 교동958도	중로3-208 교동960도	일반 도로		90.8.14	
기정	소로	3	208	6	국지 도로	252	소로2-139 교동960도	소로2-139 교동960도	일반 도로		90.8.14	
기정	소로	3	209	6	국지 도로	77	중로2-10 교동956도	소로3-212 교동956도	일반 도로		90.8.14	
기정	소로	3	210	6	국지 도로	99	중로2-10 교동954도	소로3-274 교동954도	일반 도로		90.8.14	
기정	소로	3	211	6	국지 도로	89	소로2-138 교동956도	소로3-209 교동956도	일반 도로		90.8.14	
기정	소로	3	212	6	국지 도로	195	소로2-138 교동955도	소로3-274 교동955도	일반 도로		90.8.14	
변경	소로	2	3	9~11	국지 도로	195	소로2-138 교동955도	소로3-274 교동955도	일반 도로		90.8.14	
기정	소로	3	213	6	국지 도로	86	중로2-10 교동954도	소로3-274 교동954도	일반 도로		90.8.14	
기정	소로	3	214	6	국지 도로	70	소로3-274 교동954도	중로2-10 교동954도	일반 도로		90.8.14	
기정	소로	3	215	6	국지 도로	19	소로3-203 교동953도	공공공지 교동953도	일반 도로		90.8.14	
변경	소로	3	215	6	국지 도로	19	소로3-202 교동953도	소로3-보14 교동953도	일반 도로		90.8.14	
기정	소로	3	216	6	국지 도로	19	소로3-208 교동960도	공공공지 교동960도	일반 도로		90.8.14	
변경	소로	3	216	6	국지 도로	19	소로3-208 교동960도	소로3-보15 교동960도	일반 도로		90.8.14	
기정	소로	3	217	6	국지 도로	19	소로3-208 교동960도	공공공지 교동960도	일반 도로		90.8.14	
변경	소로	3	217	6	국지 도로	19	소로3-208 교동960도	소로3-보16 교동960도	일반 도로		90.8.14	
기정	소로	3	274	4	국지 도로	199	소로3-212 교동955도	소로3-213 교동955도	일반 도로		90.8.14	
기정	소로	3	보3	4	특수 도로	23	대로1-1 교동960도	소로3-203 교동946도	보행자 전용도로		90.8.14	
기정	소로	3	보4	4	특수 도로	23	대로1-1 교동960도	소로3-208 교동960도	보행자 전용도로		90.8.14	
기정	소로	3	보5	3	특수 도로	16	소로3-203 교동948-7 도	교동948-7 도	보행자 전용도로		90.8.14	

구분	규모				기능	연장(m)	기점	종점	사용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기정	소로	3	보6	3	특수 도로	20	소로3-274 교동943-11 도	교동943-11 도	보행자 전용도로		90.8.14	
기정	소로	3	보7	3	특수 도로	12	소로2-274 교동943-5 도	교동943-5 도	보행자 전용도로		90.8.14	
기정	소로	3	보8	3	특수 도로	22	소로3-210 교동937-10 도	소로3-212 교동937-10 도	보행자 전용도로		90.8.14	
기정	소로	3	보9	3	특수 도로	15	소로3-214 교동941-2 도	교동941-2 도	보행자 전용도로		90.8.14	
기정	소로	3	보10	3	특수 도로	12	소로3-203 교동948-15 도	교동948-15 도	보행자 전용도로		90.8.14	
신설	소로	3	보14	6	특수 도로	4	대로1-1 교동953도	소로3-215 교동953도	보행자 전용도로			
신설	소로	3	보15	6	특수 도로	4	대로1-1 교동960도	소로3-216 교동960도	보행자 전용도로			
신설	소로	3	보16	6	특수 도로	4	대로1-1 교동960도	소로3-217 교동960도	보행자 전용도로			

■ 도로 결정(변경) 사유서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소로 3-212	소로 2-3	◦ 폭원 변경 ◦ 기정 6m → 변경 9~11m	◦ 실제 보도로 이용되고 있는 공공공지를 폐지하고 도로로 변경
소로 3-215	소로 3-215	◦ 연장 변경없음 (기 고시 오기에 따라 변경없음)	◦ 보행도로 이용되고 있는 도로 일부구간을 보행자도로로 변경 ◦ 기 고시된 연장 오기에 따라 금회 연장 변경 없음
소로 3-216	소로 3-216	◦ 연장 변경없음 (기 고시 오기에 따라 변경없음)	◦ 보행도로 이용되고 있는 도로 일부구간을 보행자도로로 변경 ◦ 기 고시된 연장 오기에 따라 금회 연장 변경 없음
소로 3-217	소로 3-217	◦ 연장 변경없음 (기 고시 오기에 따라 변경없음)	◦ 보행도로 이용되고 있는 도로 일부구간을 보행자도로로 변경 ◦ 기 고시된 연장 오기에 따라 금회 연장 변경 없음
-	소로 3-보14	◦ 보행자도로 신설 ◦ 폭원 6m, 연장 4m	◦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도로 일부를 보행자도로로 지정
-	소로 3-보15	◦ 보행자도로 신설 ◦ 폭원 6m, 연장 4m	◦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도로 일부를 보행자도로로 지정
-	소로 3-보16	◦ 보행자도로 신설 ◦ 폭원 6m, 연장 4m	◦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도로 일부를 보행자도로로 지정

2) 공원 결정(변경) 조서 (변경없음)

구분	도면표시번호	공원명	시설의 종류	위치	면적(m ²)			최초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기정	③	교동3호 어린이공원	어린이공원	교동 926-6	1,500.2	-	1,500.2	90.8.14	
기정	④	교동4호 어린이공원	어린이공원	교동 944	1,498.6	-	1,498.6	90.8.14	

3) 공공공지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표시번호	시설명	위치	면적(m ²)			최초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기정	②	공공공지	교동927-3 일원	2,071.4	-	2,071.4	90.8.14	
폐지	③	공공공지	교동 938	702.0	감) 702.0	0	90.8.14	
변경	④	공공공지	교동 940 일원	1,201.9	감) 56	1,145.9	90.8.14	
폐지	⑤	공공공지	교동 951	384.6	감) 384.6	0	90.8.14	
폐지	⑥	공공공지	교동 801-8 일원	45	감) 45	0	90.8.14	

■ 공공공지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③	공공공지	◦ 폐지 면적 : 702m ²	◦ 실제 보도로 이용되고 있는 공공공지를 폐지하고 도로로 변경
④	공공공지	◦ 면적 변경 : 감)56m ² 1,201.9m ² → 1,145.9m ²	◦ 학교와 중복 결정 되어있는 공공공지 일부 변경
⑤	공공공지	◦ 폐지 면적: 384.6m ²	◦ 학교와 중복 결정 되어있는 공공공지 폐지
⑥	공공공지	◦ 폐지 면적: 45m ²	◦ 학교와 중복 결정 되어있는 공공공지 폐지

다.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(변경없음)

1)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

■ 단독주택용지

구분	가구번호	면적(m ²)	획지			비고
			번호	위치	면적(m ²)	
1	A-1BL	2,214.2	1	교동950	200.6	
			2	교동950-1	229.5	
			3	교동950-2	229.1	
			4	교동950-3	228.8	
			5	교동950-4	197.8	

구 분	가구번호	면적(m ²)	획 지			비 고
			번호	위치	면적(m ²)	
			6	교동950-5	226.2	
			7	교동950-6	229.3	
			8	교동950-7	229.5	
			9	교동950-8	229.8	
			10	교동950-9	213.6	
2	A-2BL	3,075.3	1	교동948	202.5	
			2	교동948-1	204.2	
			3	교동948-2	237.3	
			4	교동948-3	211.1	
			5	교동948-4	218.1	
			6	교동948-5	238.0	
			7	교동948-6	224.5	
			8	교동948-8	212.6	
			9	교동948-9	217.9	
			10	교동948-10	217.1	
			11	교동948-11	231.9	
			12	교동948-12	269.8	
			13	교동948-13	204.0	
			14	교동948-14	186.3	
3	A-3BL	3,024.1	1	교동949	241.6	
			2	교동949-1	228.7	
			3	교동949-2	228.7	
			4	교동949-3	228.6	
			5	교동949-4	228.6	
			6	교동949-5	228.7	
			7	교동949-6	228.8	
			8	교동949-7	228.6	
			9	교동949-8	228.4	
			10	교동949-9	228.2	
			11	교동949-10	228.4	
			12	교동949-11	247.1	
			13	교동949-12	249.7	
4	A-4BL	1,332.5	1	교동947	213.1	
			2	교동947-1	223.6	
			3	교동947-2	221.0	
			4	교동947-3	226.1	
			5	교동947-4	221.6	
			6	교동947-5	227.1	

구 분	가구번호	면적(m ²)	획 지			비 고
			번호	위치	면적(m ²)	
5	A-5BL	2,187.5	1	교동946	271.9	
			2	교동946-2	265.4	
			3	교동946-3	263.1	
			4	교동946-5	233.2	
			5	교동946-6	228.4	
5	A-5BL	2,187.5	6	교동946-7	228.0	
			7	교동946-8	228.3	
			8	교동946-9	228.2	
			9	교동946-10	241.0	
6	A-6BL	372.6	1	교동944-1	186.3	
			2	교동944-2	186.3	
7	A-7BL	3,753.5	1	교동943	221.0	
			2	교동943-1	458.0	
			3	교동943-3	209.2	
			4	교동943-4	267.3	
			5	교동943-6	258.1	
			6	교동943-7	258.0	
			7	교동943-8	228.6	
			8	교동943-9	218.3	
			9	교동943-10	246.4	
			10	교동943-12	204.3	
			11	교동943-13	228.0	
			12	교동943-14	221.5	
			13	교동943-15	246.4	
			14	교동943-16	244.2	
			15	교동943-17	244.2	
8	A-8BL	4,648.4	1	교동937	228.5	
			2	교동937-1	217.4	
			3	교동937-2	435.4	
			4	교동937-3	218.1	
			5	교동937-4	226.0	
			6	교동937-5	225.4	
			7	교동937-6	217.6	
			8	교동937-8,-9	497.4	
			9	교동937-11	229.4	
			10	교동937-12	239.2	
			11	교동937-13	231.1	
			12	교동937-14	253.5	
			13	교동937-15	253.6	
			14	교동937-16	208.9	

구 분	가구번호	면적(m ²)	획 지			비 고
			번호	위치	면적(m ²)	
			15	교동937-17	212.4	
			16	교동937-18	225.3	
			17	교동937-19	265.0	
			18	교동937-20	264.2	
9	A-9BL	2,615.7	1	교동941	200.5	
			2	교동941-1	229.4	
			3	교동941-3	224.4	
			4	교동941-4	239.1	
			5	교동941-5	212.8	
			6	교동941-6	208.7	
			7	교동941-7	226.4	
			8	교동941-8	231.4	
			9	교동941-9	229.2	
			10	교동941-10	203.3	
			11	교동941-11	202.6	
			12	교동941-12	207.9	
10	A-10BL	2,322.2	1	교동942	234.5	
			3	교동942-2	202.1	
			4	교동942-3	202.2	
			5	교동942-4	202.3	
			6	교동942-5	202.4	
			7	교동942-6	234.8	
			8	교동942-7	234.9	
			9	교동942-8	202.2	
			10	교동942-9	202.4	
			11	교동942-10	202.2	
			12	교동942-11	202.2	
			11	A-11BL	1,569.4	1
2	교동930-1	262.8				
3	교동930-2	253.6				
4	교동930-3	253.6				
5	교동930-4	263.0				
6	교동930-5	266.4				
12	A-12BL	2,800.6	1	교동931	211.0	
			2	교동931-1	195.8	
			3	교동931-2	195.9	
			4	교동931-3,-4	391.2	
			5	교동931-5	195.5	

구 분	가구번호	면적(m ²)	획 지			비 고
			번호	위치	면적(m ²)	
12	A-12BL	2,800.6	6	교동931-6	210.6	
			7	교동931-7	210.8	
			8	교동931-8	195.7	
			9	교동931-9	195.9	
			10	교동931-10,-11	391.6	
			11	교동931-12	195.7	
13	A-13BL	4,050.6	12	교동931-13	210.9	
			1	교동933	197.6	
			2	교동933-1,-2	407.8	
			3	교동933-3,-4	407.8	
			4	교동933-5	407.3	
			5	교동933-6,-7,-12	611.1	
			6	교동933-8	203.7	
			7	교동933-9	197.6	
			8	교동933-10	197.4	
			9	교동933-11	203.8	
			10	교동933-13	203.9	
			11	교동933-15	203.9	
			12	교동933-16	203.7	
			13	교동933-17	203.6	
			14	교동933-18	204.0	
15	교동933-19	197.4				
14	A-14BL	4,037.2	1	교동934	197.3	
			2	교동934-1	203.5	
			3	교동934-2	204.2	
			4	교동934-3	203.5	
			5	교동934-4	203.4	
			6	교동934-5	203.6	
			7	교동934-6	203.8	
			8	교동934-7	203.6	
			9	교동934-8	203.5	
			10	교동934-9	197.4	
			11	교동934-10,-11	391.4	
			12	교동934-12	203.9	
			13	교동934-13	203.6	
			14	교동934-14	203.7	
			15	교동934-15	203.4	
			16	교동934-16	203.3	
			17	교동934-17	203.5	

구 분	가구번호	면적(m ²)	획 지			비 고
			번호	위치	면적(m ²)	
			18	교동934-18	203.5	
			19	교동934-19	197.1	
15	A-15BL	2,920.6	1	교동935,-13	440.1	
			2	교동935-1	203.8	
			3	교동935-2	203.8	
			4	교동935-3	204.1	
			5	교동935-4	204.1	
			6	교동935-5	204.1	
			7	교동935-6	220.3	
			8	교동935-7	220.3	
			9	교동935-8	204.0	
			10	교동935-9	204.0	
			11	교동935-10	204.1	
			12	교동935-11	203.9	
			13	교동935-12	204.0	
16	A-16BL	2,776.7	1	교동936,-12	413.2	
			2	교동936-1	210.4	
			3	교동936-2	210.3	
			4	교동936-3	222.9	
			5	교동936-4	236.6	
			6	교동936-5	206.9	
			7	교동936-6	196.1	
			8	교동936-7	210.8	
			9	교동936-8	229.2	
			10	교동936-9	214.7	
			11	교동936-10	214.3	
			12	교동936-11	211.3	
17	A-17BL	3,939.2	1	교동925	401.9	
			2	교동925-1	195.2	
			3	교동925-2	195.1	
			4	교동925-3	195.4	
			5	교동925-4	195.2	
			6	교동925-5	195.4	
			7	교동925-6	195.3	
			8	교동925-7	195.6	
			9	교동925-8	195.3	
			10	교동925-9	206.4	
			11	교동925-10	206.2	
			12	교동925-11	195.1	

구 분	가구번호	면적(m ²)	획 지			비 고
			번호	위치	면적(m ²)	
17	A-17BL	3,939.2	13	교동925-12	195.5	
			14	교동925-13	195.1	
			15	교동925-14	195.4	
			16	교동925-15	195.3	
			17	교동925-16	195.2	
			18	교동925-17	195.3	
			19	교동925-18	195.3	
18	A-18BL	2,453.5	1	교동926	206.4	
			2	교동926-1	204.2	
			3	교동926-2	204.1	
			4	교동926-3	204.2	
			5	교동926-4	204.1	
			6	교동926-5	204.1	
			7	교동926-7	204.0	
			8	교동926-8	408.2	
			9	교동926-10	203.9	
			10	교동926-11	204.1	
			11	교동926-12	206.2	
19	A-19BL	2,708.3	1	교동928	233.3	
			2	교동928-1	222.2	
			3	교동928-2	222.3	
			4	교동928-3	222.1	
			5	교동928-4,-5	454.7	
			6	교동928-6	232.7	
			7	교동928-7	221.8	
			8	교동928-8	222.1	
			9	교동928-9	222.2	
			10	교동928-10	222.0	
			11	교동928-11	232.9	
20	A-20BL	1,512.0	1	교동929	275.1	
			2	교동929-1,-2	487.8	
			3	교동929-3	244.0	
			4	교동929-4	244.3	
			5	교동929-5	260.8	

■ 단독주택용지

구 분	가구번호	면적(m ²)	획 지			비 고
			번호	위치	면적(m ²)	
1	B-1BL	12,292.8	1	교동924	12,292.8	
2	B-2BL	28,409.6	2	교동923	28,409.6	

■ 근린생활시설용지

구 분	가구번호	면적(m ²)	획 지			비 고
			번호	위치	면적(m ²)	
1	C-1BL	1,849.0	1	교동945	314.3	
			2	교동945-2	315.2	
			3	교동945-3	299.6	
			4	교동945-4	309.7	
			5	교동945-5	310.2	
			6	교동945-6	300.0	
2	C-2BL	1,815.8	1	교동932	303.9	
			2	교동932-1	294.8	
			3	교동932-2,-4	618.9	
			4	교동932-5	294.6	
			5	교동932-6	303.6	
3	C-3BL	1,812.0	1	교동927	303.2	
			2	교동927-1	293.9	
			3	교동927-2	308.2	
			4	교동927-4	309.5	
			5	교동927-5	293.9	
			6	교동927-6	303.3	

■ 유치원

구 분	가구번호	면적(m ²)	획 지			비 고
			번호	위치	면적(m ²)	
1	D	638.9	1	교동939	534.4	
			2	교동939-1	104.5	

■ 공공용지

구 분	가구번호	면적(m ²)	획 지			비 고
			번호	위치	면적(m ²)	
1	E	234.6	1	교동942-1	234.6	

2) 최대개발규모에 관한 계획

가구번호	최대개발규모	적용대상	비 고
A	660m ²	단독주택용지	
C	1,000m ²	근린생활시설용지	

라. 건축물의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(변경 없음)

■ 단독주택용지(제1종일반주거지역)

도면표시 번호	위 치 (가구번호)	구 분	결 정 내 용
A	1, 2, 4, 6~10, 12~19	용도	허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, 제4호의 제1·2종근린생활시설(연면적 60% 이하. 단,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)
			불허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		건 폐 율	60% 이하
		용 적 률	200% 이하
		높 이	4층 이하
		형 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층부는 접한도로 및 공지와의 높이차를 10cm이하로 권장 그 이상의 단차가 불가피한 경우 외부계단이 돌출되지 않도록 권장
		배 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건축물의 주된 벽면의 방향은 접한 전면가로의 방향과 가급적 일치
건 축 선	-		

■ 단독주택용지(제2종일반주거지역)

도면표시 번호	위 치 (가구번호)	구 분	결 정 내 용
A	3, 5, 11, 20	용도	허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, 제4호의 제1·2종근린생활시설(연면적 60% 이하. 단,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)
			불허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		건 폐 율	60% 이하
		용 적 률	250% 이하
		높 이	-
		형 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층부는 접한도로 및 공지와의 높이차를 10cm이하로 권장 그 이상의 단차가 불가피한 경우 외부계단이 돌출되지 않도록 권장
		배 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건축물의 주된 벽면의 방향은 접한 전면가로의 방향과 가급적 일치
건 축 선	-		

■ 공동주택용지

도면표시 번호	위 치 (가구번호)	구 분	결 정 내 용
B	1~2	용도	허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, 연립주택 주택법 제2조 제8호, 제9호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
			불허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		건 폐 율	50% 이하
		용 적 률	300% 이하
		높 이	-
		형 태	-
		배 치	-
건 축 선	-		

■ 근린생활시설용지(제1종일반주거지역)

도면표시 번호	위 치 (가구번호)	구 분	결 정 내 용	
C	1 ~ 3	용도	허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(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)
			불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		건 폐 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60% 이하 	
		용 적 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00% 이하 	
		높 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4층 이하 	
		형 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층부는 접한도로 및 공지와의 높이차를 10cm이하로 권장 그 이상의 단차가 불가피한 경우 외부계단이 돌출되지 않도록 권장 	
		배 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건축물의 주된 벽면의 방향은 접한 전면가로의 방향과 가급적 일치 	
		건 축 선	-	

■ 근린생활시설용지(제2종일반주거지역)

도면표시 번호	위 치 (가구번호)	구 분	결 정 내 용	
C	1 ~ 3	용도	허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(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)
			불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		건 폐 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60% 이하 	
		용 적 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50% 이하 	
		높 이	-	
		형 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층부는 접한도로 및 공지와의 높이차를 10cm이하로 권장 그 이상의 단차가 불가피한 경우 외부계단이 돌출되지 않도록 권장 	
		배 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건축물의 주된 벽면의 방향은 접한 전면가로의 방향과 가급적 일치 	
		건 축 선	-	

■ 유치원

도면표시 번호	위 치 (가구번호)	구 분	결 정 내 용	
D	1	용도	허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2호 시설(30% 미만에 한함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학원, 독서실, 아동전용시설, 어린이도서관
			불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		건 폐 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60% 이하 	
		용 적 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00% 이하 	
		높 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4층 이하 	
		형 태	-	
		배 치	-	
건 축 선	-			

■ 공공용지

도면표시 번호	위 치 (가구번호)	구 분		결 정 내 용
E	1	용도	허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○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, 기록매체복제업, 봉제업(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),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,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, 두부제조업,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.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 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.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. 다만,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. 라.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마.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.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
			불허	○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		건 폐 율	○ 60% 이하	
		용 적 률	○ 200% 이하	
		높 이	○ 4층 이하	
		형 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1층부는 접한도로 및 공지와와의 높이차를 10cm이하로 권장 ○ 그 이상의 단차가 불가피한 경우 외부계단이 돌출되지 않도록 권장 	
		배 치	○ 건축물의 주된 벽면의 방향은 접한 전면가로의 방향과 가급적 일치	
		건 축 선	-	

마.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 (변경없음)

■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

구 분	적 용 대 상	적 용 기 준	비 고
대지의 조경	전구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면적 2천㎡ 이상인 건축물 : 대지면적의 15% 이상 ○ 연면적 1천㎡ 이상 2천㎡ 미만인 건축물 : 대지면적의 10% 이상 ○ 연면적이 1천㎡ 미만인 건축물 : 대지면적의 5% 이상 	속초시 건축조례 준용

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

「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 제22조 제3항에 따라 철거·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 건축물대장 상 소유자에게 말소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나, 소유자의 주소 불명 등으로 말소처리를 통지할 수 없어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2. 9. 16.

속 초 시 장

1. 공고기간 : 2022. 9. 16. ~ 2022. 9. 30. (14일간)
2. 공고장소 : 속초시 홈페이지, 게시판,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
3. 공시송달 내용

처분의 제목	당사자		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	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
	성 명	주 소		위 치	건축물현황
건축물대장 직권말소 (말소일:2022.9.15.)	이○진	강원도 속초시 대포동 나 291	건축물 부존재	대포동 393-25	목조 주택 25.92㎡

4. 유의 사항

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속초시 건축과(☎033-639-151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의견제출서

※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의견제출인	성명	
	주소	전화번호
의견제출 내용	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	
	당사자	성명(명칭)
		주소 (전화번호: _____)
	의견	
기타		

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제1항(제31조제3항)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의견제출인

(서명 또는 인)

속초시장

귀하

유의사항

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2.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속초시의회 공고 제2022-19호

「속초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(조례안 예고) 및 「속초시의회 회의규칙」 제19조의2(조례안 예고)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9월 15일

속 초 시 의 회 의 장 (관인생략)

속초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: 조례안 참조

2. 기 간 : 2022. 9. 15. ~ 2022. 9. 20.(6일간)

3. 의견제출

가.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속초시 기관·단체, 개인은 2022년 9월 20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의회 의장(대표발의 방원욱 의원, 속초시의회 전문위원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제출 사항

- 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여부와 그 이유)
- 2) 의견제출자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3) 기타 참고사항 등

다. 의견제출 장소 : 24826 / 속초시 중앙로 183, 속초시의회
방원욱 의원(☎ 033-639-1636, FAX 033-639-2634)

라. 의견제출 방법 : 서면, 전화, FAX, 이메일(500cc@korea.kr),
시의회 홈페이지, 직접방문 등

(의견서 예시)

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조례명 :

제출자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소 :

○ 연락처 :

제출의견

조례안 내용	찬성여부		의견	비고
	찬성	반대		

기타 참고사항

○

속초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방원욱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 : 2022. 9. .

발 의 자 : 방원욱 의원 외 인

1. 제안이유

「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」 개정(2016.5.29.)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대한 운영비의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고,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을 정비함으로써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희생한 재향군인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시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 등 공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재향군인회의 운영비 지원근거 추가(안 제4조)

나. 재향군인회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변경(안 제5조)

- 재향군인회 시설물 기능보강사업
- 지역 향토방위 협조 및 지원사업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

- 「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」 제16조(재정)

나. 기 타

- 1) 집행부 의견청취
- 2) 조례안 예고
- 3)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속초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속초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중 “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”을 “재향군인회의 운영 및 사업”으로 한다.

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16조제3항”을 “제4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호를 제4호로 하며, 같은 조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5. 지역 향토방위의 협조 및 지원사업
6. 재향군인회 시설물 기능보강사업
7.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권익 향상과 공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예산지원) 시장은 <u>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5조(지원대상사업) <u>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 3. (생략) 4. <u>중·고교학생 병영체험활동 지원사업</u> 5. <u>태극기 달아주기 운동사업</u> 6. <u>6.25전쟁 기념사업 및 전적비 관리사업</u> 7. <u>지역사회 봉사활동사업</u> 	<p>제4조(예산지원) ----- <u>재향군인회의 운영 및 사업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제5조(지원대상사업) <u>제4조</u>----- 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<u>6.25전쟁 기념사업 및 전적비 관리사업</u> 5. <u>지역 향토방위의 협조 및 지원사업</u> 6. <u>재향군인회 시설물 기능보강사업</u> 7. <u>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권익 향상과 공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</u>

「붙임」

관계법령 발췌서

□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

제16조(재정) ① 재향군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, 사업수입,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5. 29.>

③ 삭제 <2016. 5. 29.>